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

일시 : '21. 3. 31. 14시 ~ 15시 30분

장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권인숙·양금희

주관 : 여성가족부·경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사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등록 및 입장	13:30~14:00 ('30)	참석자 안내 및 등록
개회사	14:00~14:01 ('01)	개회 (사회: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최종상)
인사말씀·축사	14:01~14:21 ('20)	국회: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양금희 정부: 여가부장관 정영애, 경찰청장 김창룡
법안 설명	14:21~14:30 ('09)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설명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정연)
주제 발표	14:30~14:55 ('25)	좌 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조은경 발표1: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유나겸) 발표2: 위장수사 법안개정 관련,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미혜) 발표3: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장윤식)
토 론	14:55~15:29 ('34)	토론자: 시민단체(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강선혜), 학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윤정숙), 정부(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홍영선), 현장(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팀장 박성혜)
폐회사	15:29~15:30 ('01)	폐 회

CONTENTS

인사말씀

- 국 회 의 원 권인숙	3
- 국 회 의 원 양금희	5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7
- 경 찰 청 장 김창룡	9

법안 설명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내용	1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정연	

발 표 문

발표 1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유나겸	15
발표 2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미혜	29
발표 3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장윤식	41

토 론 문

토론 1 (사)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강선혜	65
토론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윤정숙	69
토론 3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홍영선	73
토론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박성혜	77



인사말씀

-
- 국 회 의 원 권인숙
 - 국 회 의 원 양금희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 경 찰 청 장 김창룡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입니다.

→ article + china
↳ not !!

오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공동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함께 뛰여주시고 오늘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에 힘써주신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님, 경찰청 김창룡 청장님, 그리고 행사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저는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중요 처리법안으로 정하여 지난 8개월 동안 온라인 그루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관련 경찰과 법무부의 의견 차이를 조율 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뛰었습니다. 이 통과는 여야를 초월한 여성의원들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의제 처리에 이런 협력이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은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히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위장수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입법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무법천지로 이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유인, 접근 행위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까지, 이 모든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법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 확대 및 엄정대응,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 기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앞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N번방 사건 같은 잔악한 범죄나 무한정으로 커져 버린 아동·청소년 성 착취시장을 무너트리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 살아 기능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다 함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 3. 31.

국회의원 권인숙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성폭력 뉴스?

2020년 3월,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았던 대구 코로나 공포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n번방 사건을 접했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내용이라, 사실이 아닐길 간절히 바라면서, 즉시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런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 일부가 잡혔지만, 또다른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가해와 피해가 반복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무한한 온라인 공간 어디에선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다크웹,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여성과 어린 아동까지 그 피해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반영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확장성으로 범죄의 피해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문제의식과 입법의 필요성으로, 지난 2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첫째,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아동·청소년 유인 온라인 그루밍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둘째, 폐쇄성, 보안성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익명성을 악용했던 디지털 공간에 경찰이 상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범죄자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사전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과정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일선 수사관계자들, 피해자 보호에 애쓰시는 현장활동가들, 범죄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신 전문가들과 범죄상황을 취재하여 알려온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법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별 이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발본색원 해야한다는 시급성에는 결코 뜻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도 여야를 초월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같은 의지가 모여 개정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화 과정에서 위장수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오남용 사례 우려도 있었습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해당부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국가를 넘어 세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듯, 이번 개정안과 오늘의 논의를 통해 모아질 의견들이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는데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31.

국회의원 양금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이렇게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인숙의원님과 양금희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의 특례와 더불어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작년, 다크웹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반인륜성에 우리 사회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법 개정 논의 과정상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다면 법 개정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법무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어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좌장 조은경 교수님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분들과 학계, 시민단체, 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주시는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미나에 참여해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댁내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31.

여성가족부 장관 정 영 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써 주셨으며 이번 세미나까지 준비해주신 권인숙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조은경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참석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정법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로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하고 그 절차와 방식, 위장수사로 취득한 증거와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위장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법의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의 前 단계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함으로써 온라인 그루밍 → 성매매 → 성착취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초기부터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억제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해 경찰이 준비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위장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등 위장수사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과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 디지털 성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권인숙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을 각계 각층에 알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31.

경찰청장 김 창 룡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 정 연

① 추진 배경

- 다크웹 및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계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 부처 합동) 수립에 따른 입법 추진 과제

② 추진 경과

- (의원발의) 권인숙의원('20.6월), 진선미의원('20.8월), 양금희의원('20.11월), 황보승희의원('21.3월)
- (국회 논의) 여가위 법안소위('20.9월~'21.2월), 법사위 전체회의('21.2월), 본회의 통과('21.2.26.)
 - 잠입수사의 세부적인 수사 개시·통제 유무 및 범위에 관한 관계 기관의 입장 반영을 위하여 협의 지속 추진
- (공포 및 시행) '21.3.23. 공포, 9.24. 시행 예정

기관협의
대응이
중점
필수

③ 개정법 주요 내용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처벌

※ (그루밍 개념) 성착취를 수월하게 행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혹은 취약한 지위의 대상)을 대상으로 친분·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다양한 통제·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
* 지난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11.1%, 성적 대화 유인이 9.3%로 가장 높은 비율, 만남까지 유인된 경험은 2.7%('19 성매매 실태조사, 여가부)
- 외국 입법례 등에서 통일된 정의 개념은 없으나 통상 “성행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장, 유혹·유인, 권유, 강요, 대화하는 행위”를 그루밍으로 명명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 특례 마련(아동청소년성착취물·그루밍·불법촬영물 배포 범죄 限)
-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승인 必, 수사기간은 3개월
 - 수사 종료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자료 보고, 상임위원회에 반기별 보고

- (신분위장수사)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판매·광고 가능
 -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 가능하며,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 必
- (기타)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에 따른 위법행위 시 면책조항,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④ 기대 효과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이 용이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그루밍(길들이기)’ 행태를 선제적으로 제재하여 강간·성착취물 유포 등 심각한 성범죄 피해 발생 예방
- 경찰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를 입법을 통해 구현

⑤ 향후 추진 계획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집행을 위한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

정착취물 관련
9월 24일부터
시행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방안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I. 박사 유료방 잠입을 위한 위장수사 상황

1. 텔레그램 ‘박사방’의 구조

박사 조주빈은 텔레그램이라는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고, 최초의 ‘박사방’(‘박사’가 운영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총칭)인 ‘무법지대’라는 이름의 그룹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사가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판매하였다.

‘박사방은’ ① 다수 일반 회원을 유치한 후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를 홍보 목적으로 공개하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한 ‘일반방’과 ② 일반회원 중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 20~30여명이 상시 활동하며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한 ‘시민방’, ③ 회원들로부터 일정금액(70~150만원)을 받고 일반회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고액방’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박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 확보, 범행증거 수집, 공범 확인, 새로운 피해여성 확인 및 보호를 위해서 ‘박사방’ 중 ‘시민방’과 ‘고액방’에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잠입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2. 1차 위장수사 상황 - ‘시민방’인 ‘노아의 방주’ 잠입 과정

2019. 11. 26. ‘박사’는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 무렵 회원 중 1명이 일반방(무료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박사방’을 닫거나 재편성하면서 ‘노아의 방주’ 방만 운영하겠다는 광고성 글을 유포하고 있었고, 이에 수사팀에서는 일정 금액을 박사에게 송금하고 ‘노아의 방주’방에 잠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10만원을 보낸 후 같은 날 14시경 ‘노아의 방주’방에 입장할 수 있었고, 그 당시 노아의 방주방에는 17명이 참여중이었으며, 박사는 ‘프락치나 형사나

기자는 못올린다'며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성착취물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유포 인증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위장 입장한 우리 수사관은 아동성착취물 유포 행위를 할 수 없어 관망하던 중, 박사가 대화명 '일이야'를 상대로 유포 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유포하지 못하자 '기자님 50만원 감사합니다. 강퇴할게요'라며 해당 이용자를 퇴장시켜 버렸다.

박사의 그러한 행위에 수사팀은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까지 노아의 방주 방에 있어야 하는지 등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하였고, 사건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장혜영 검사와 이에 대해 상의한바, 장 검사는 "피해 아동이 특정되어 있고, 아동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피해와 수사 실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였다.

피해 아동 및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포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방은 삭제되었다.

3. 2차 위장수사 상황 - '고액방'인 '위커방' 잠입 과정

'노아의 방주' 위장 수사에 실패한 이후 수사팀은 더 이상 박사방에 잠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박사 피해 여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성착취 영상을 맛보기 식으로 유포 하던 일반방은 거의 없어지고 증거수집 및 수사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수사팀은 박사가 고액방을 단일화하였다며 '위커'방을 홍보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 방에 다시 잠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사'가 말하는 '고액방'은 일정한 후원금을 지불한 사람들만 초대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성 착취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룹방으로, 해당 방에서는 아직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피해 영상들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여 피해자 확보, 단서 발견, 채증 등을 하기 위해 입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0. 1. 9. 15시경 담당 수사관은 70만원을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박사에게 송금하였고, 박사가 우선 위커방 입장 전 '샘플방' 주소를 전송해줘 해당 방에서 박사의

성착취물 수백개를 확인하고 이를 모두 채증하였다.

그 후, 박사는 유출, 기자 및 형사 때문에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박사방을 알게 된 경위, 감명 깊었던 작품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답을 하자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홍보 문구와 달리 갑자기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수사팀은 당황을 감출 수 없었고, 잠입 수사관과 수사팀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우왕좌왕 하던 중 우선 지인의 신분증을 부탁해서 전송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을 보내자, 박사는 ‘새끼 손가락을 들고 얼굴 인증(셀카) 사진’을 보내라고 또 요구하여 이미 70만원을 보냈고, 지인을 설득하여 신분증을 전송해주었으나 또 얼굴 인증을 요구하는 등 박사의 치밀하면서도 앞 뒤가 다른 언행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사팀은 ‘너 잡히면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지인을 재차 설득하여 새끼손가락 인증 셀카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박사는 ‘위커방’에 끝내 입장시켜주지 않았고, 추가 보증금 70만원을 주면 3일안에 돌려주겠다고 돈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사기 목적으로 판단되어 진행을 중단하였다.

Ⅱ. 위장수사의 법제화(2021. 9. 시행)

박사방 수사와 같이 디지털 성착취물의 탐지와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보호하고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1. 9.경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 위장수사의 유형

(1) 신분비공개 수사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활동으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2) 신분 위장수사

① 신분을 위장한 문서 행사, ②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 및 거래, ③ 아동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 이 3가지 유형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2. 위장수사 법제화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박사방 수사를 2021. 9. 이후 하게 된다면, 2차 위장수사 상황에서 수사팀은 별다른 고민 없이 긴급으로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한 후 이를 박사에게 전송하고, 가상 인물의 셀카 사진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련의 과정은 사후 법원의 허가를 받는 ‘긴급 위장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수사관의 신분노출 등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발전방안(건의사항)

1. ‘신분비공개 수사’ 관련 법조문 일부 개정

‘신분 위장 수사’는 최대 1년까지는 3개월 마다 연장이 가능하나, ‘신분비공개 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한의 제한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공조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분 위장수사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를 3개월간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긴급 신분 위장수사와 같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상급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는 ‘신분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규정 마련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 등)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이 없다면, 신분 위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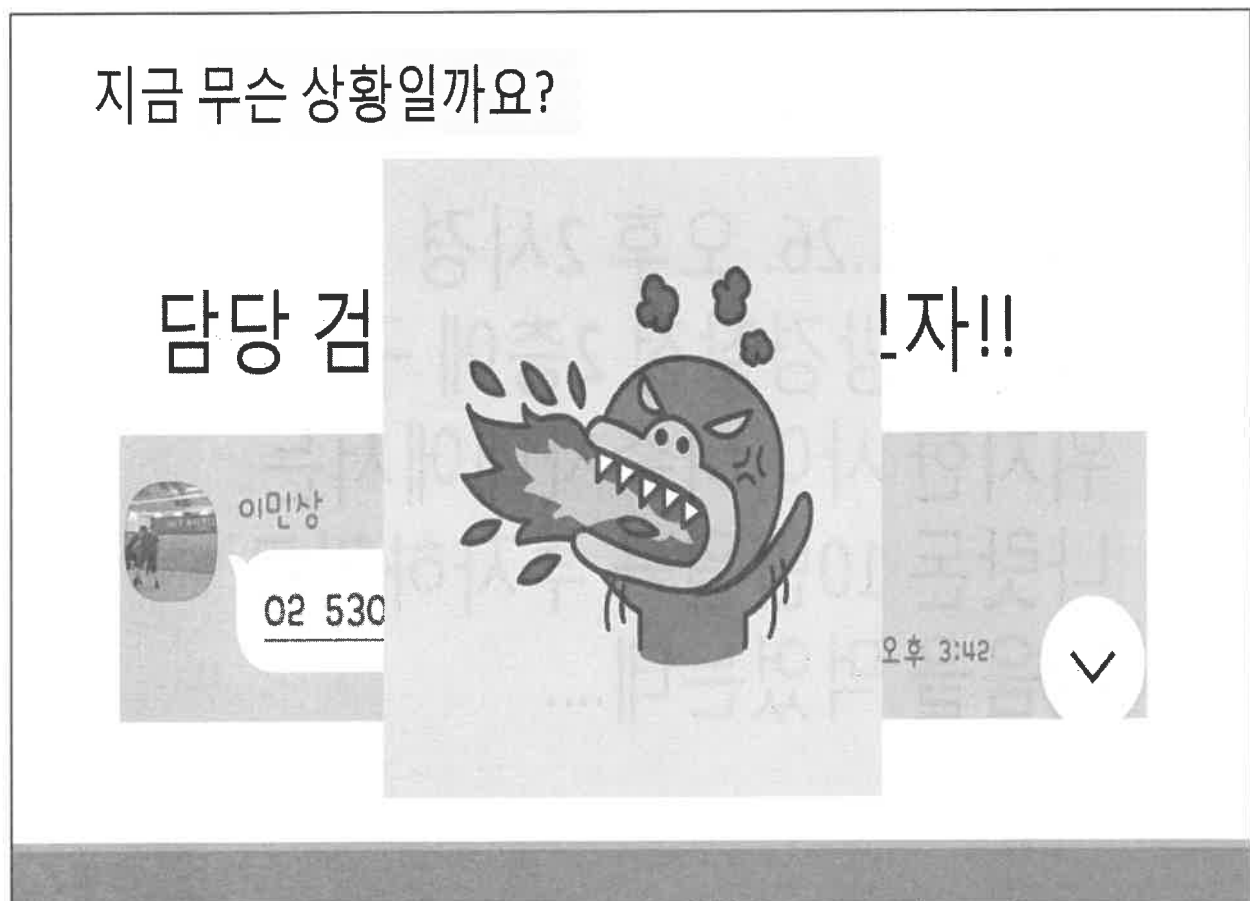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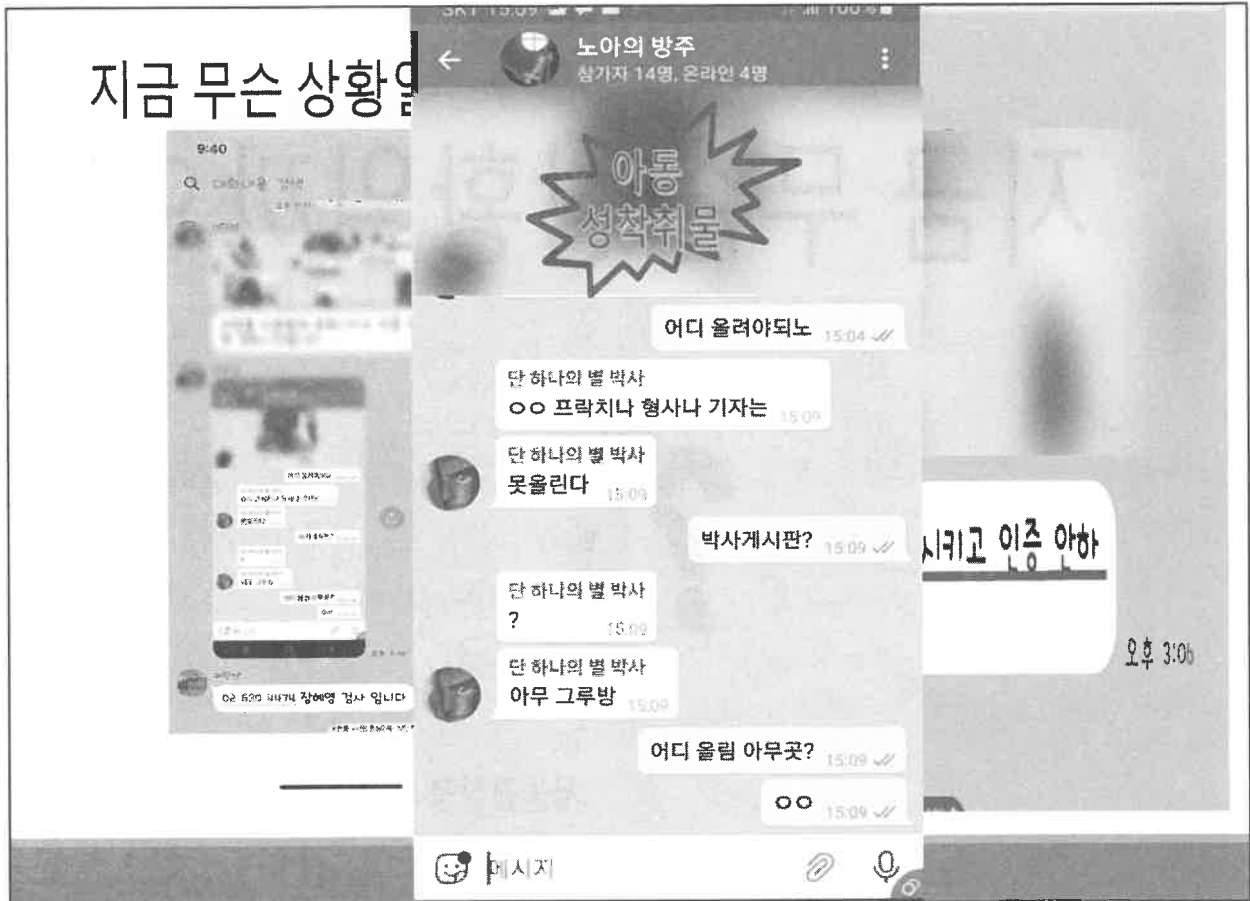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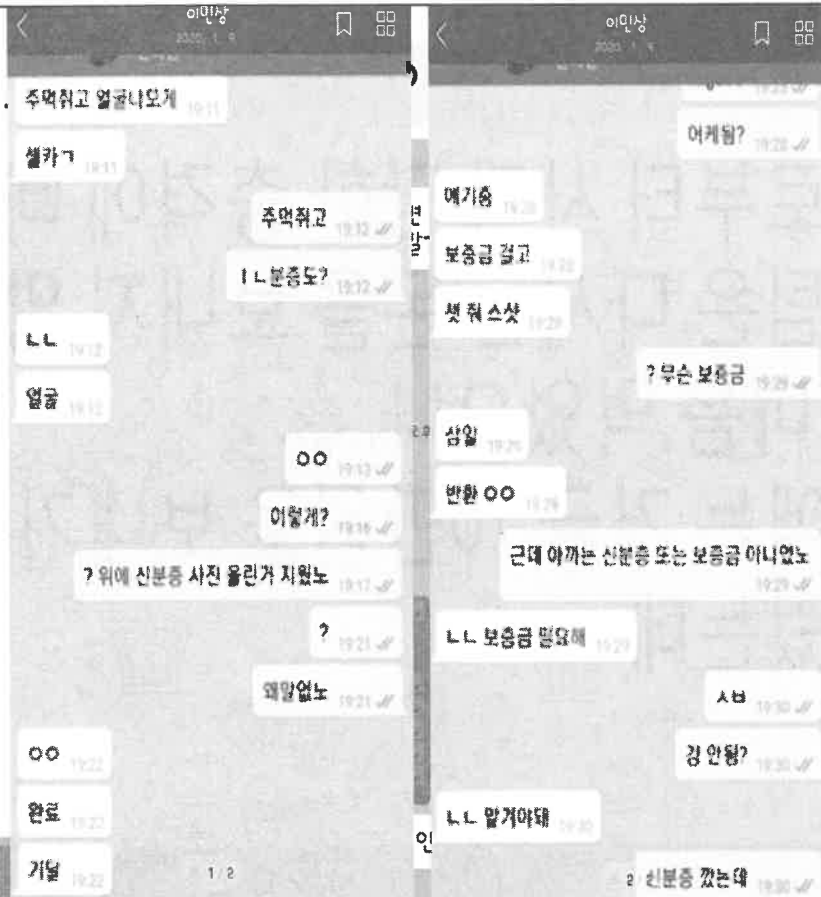
2019. 11.26.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에 구석에
위치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나랏돈 10만원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박사로부터 사기 당한 충격에 빠진
수사팀은 다시는 돈을 보내지 않겠
다고 마음 먹었으나.....
이번에는 거금 70만원을 보내기에
이르렀는데.....



이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방안

- 위장 수사를 중심으로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 위장수사의 법제화 ★

신분 비공개 수사

- ☞ (법조문) 청소년 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제1항
- ☞ (개념)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수집
- ☞ (승인)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필요

신분 위장 수사

- ☞ (법조문) 청소년 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제2항
- ☞ (개념) 신분위장 문서 행사, 위장신분 이용 계약, 성착취물 판매 광고
- ☞ (허가) 검사 필요적 청구 + 법원의 허가

★ 박사방 수사를 다시 한다면 ★

신분위장 문서 작성, 행사

- ~~범인에게 개인 신분을 노출하는 두려움과 법적 책임 문제~~
- 위장 신분 행사로 신분 노출 두려움과 면책조항으로 책임 해소

위장신분 이용 계약, 거래

- ~~유료방 독발, 범행 압증 증거척제, 추가 피해자 파악 불가~~
- 위장 신분 이용한 계약, 거래로 유료방 잠입 가능, 불안감 해소



긴급 신분 위장 수사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으면, 사후 허가를 요건으로 긴급 신분 위장 수사 가능

★박사방 수사를 다시 한다면 ★

< 긴급 신분위장 수사 코스로 진행 >

'박사'에게
가상인물
신분증
제시!!



가상인물이
새끼손가락
들고 있는
사진 전송



당당하게
유료방에
입성!!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발전 방안★

1

‘신분 비공개 수사’에 관련 법조문 개정 건의

▲기간(3개월) 연장 가능 규정, ▲ 긴급 비공개 수사 규정 신설

2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규정 마련 건의

감사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유나겸

위장수사 법안개정 관련,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

—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미혜

위장수사 법안개정 관련,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박미혜

I.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행위태양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하는 수사 경찰관들의 수고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 수사 특례 법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 2(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법안 개정으로 이를 수사하는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비접촉 성범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심각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접촉범죄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사의 현실

2012년 초(오래전 하달된 공문이라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으나, 2012년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지원팀 과 서무를 할 당시 성매매 업무 분장과 관련되어 수사과 지능팀에서 사건을 하기 시작 한 것으로 기억함) 여성·청소년계에서 하던 성매매(풍속)업무가 단속은 질서계, 수사는 지능팀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2013년 8월부터 일선 서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업무를 하는 여성·청소년계와 성폭력을 전담으로 하는 성폭력수사팀으로 분리되고, 성폭력 수사팀은 수 년 동안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형사와 담당업무였던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수사까지의 업무들이 이관되어 현재 모습의 여청수사팀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상시 단속, 방학기간 중에는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하여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사범을 단속하였고, 그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생활질서계에서 신종 업소 성매매 단속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은 경찰 업무에서 점점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외부 학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NGO 등에서는 여청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 아동과 관련된 형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2021년 초에는 경찰청 업무조정 지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는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업무 범주에 명확히 포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내부에서 쉽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을 여청수사팀 소관이니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상급경찰관서에서 지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발표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청수사팀 업무가 상당히 예민한 것들이 총 집합되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 부하된 상태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매년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건들은 터지고 모든 책임은 경찰로,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청수사팀이 감당해야 한다.

112 ‘코드 0’ 신고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현장에 필히 출동해 판단해야하고, 설령 현장 종결 되었다 하더라도 여청과 관리자들은 다음날 아침 발생보고서가 들어와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현장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혹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하루하루 뇌는 풀가동 되고 심장은 쫄깃쫄깃해질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다. 여청수사팀에서 이 업무들을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렇게 단언하고 싶다).

두 번째,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상에서 만난 대상자들의 정보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을 진행 하는 방식은 온라인 상의 채팅방에서 피해아동에게 경찰관임을 숨기고 마치 성 매수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아동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피해아동과 만나 성 매수를 했거나 성매매를 유인한 사람들의 닉네임, 아이디 등을 확인, 통신·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하였다.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성 매수자 특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 피해 아동을 접촉하는 그 단계부터 합법적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작부터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임을 숨기고, 성 매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신분을 숨기거나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 과정들이 법률에 구체적 명시되지 않아 합정수사가 아니라는 판례에 의존하여 경찰관들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Ⅲ. 위장수사 특례 확대 적용 제언

위와 같은 여청수사팀의 현실적인 문제들 중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경찰내부에서 정원충원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 세 번째 사유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언을 하고자 한다.

‘N번방’ 사건을 겪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척결 여론이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제11조와 개정안인 제15조의 2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1:1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는 범죄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에 의해 신고가 되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으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음)

위와 같은 비접촉 범죄는 위장수사에 대한 특례가 시행 적용됨으로써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도 언급하였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매매와 같은 접촉범죄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자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등)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행위까지 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해자 확보단계부터 합법적으로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자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교 행위 등의 행위 실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장수사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수를 위한 유인범죄(제13조)의 경우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범죄(제14조 제3항)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IV. 마지막으로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법안을 만들고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관련부처,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법안 개정안들은 분명 깊이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여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다.

발표자가 제안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련 피해자 단계부터 신분비공개 수사 특례 규정, 제13조, 제14조 제3항에 미수범 처벌규정, 피해자 없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촘촘하고 날카로운 구성요건 법안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현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위장수사 법안개정 관련 아동·청소년 성매매수사의 현실과 제언

발표 | 정정 박미혜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목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특례적용 법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사의 현실

위장수사 특례 확대 적용 제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에 해당하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수입·수출·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2(개정안)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사의 현실

여성·청소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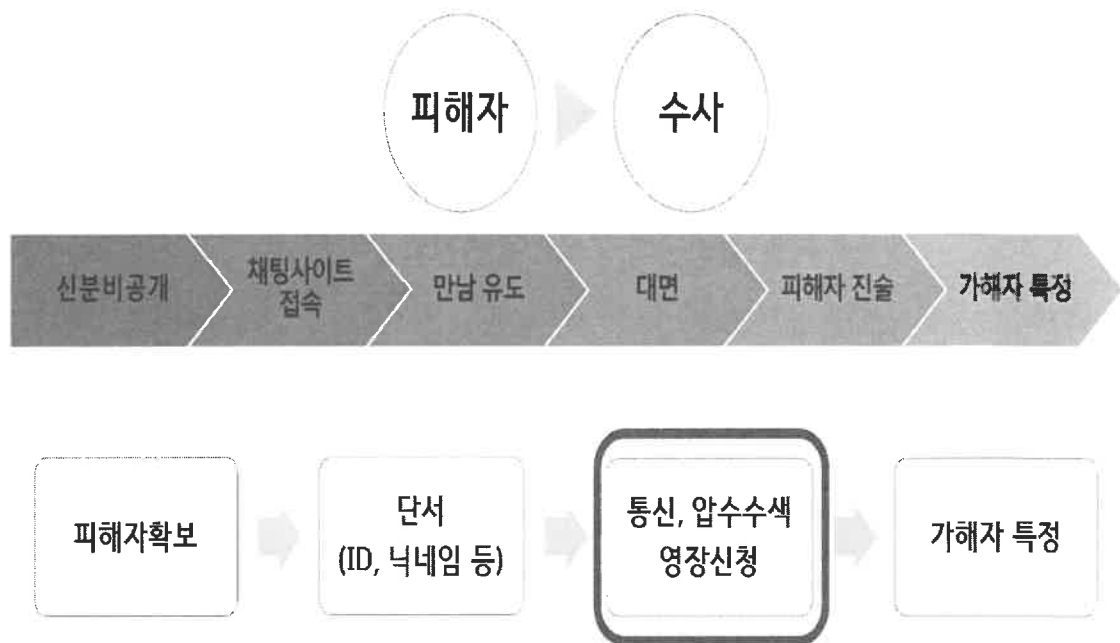
단속·생활질서
수사·지능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수사 절차



수사상 어려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상에서 만난
가해자의 정보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특정을 위해 피해자 설득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의 효율성 이 떨어진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사건에 집중 할 여건이 안된다.



피해자(아동·청소년)을 접촉하는 방법이 합법적인지
모호하기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제13조, 제14조까지 위장수사의 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해
-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 폭행·협박으로
-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 위계·위력으로
- 업무·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 영업으로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 확보단계부터 합법적인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필요



2. 피해자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법안 필요

3. 성교행위 등의 행위 실현을 요건으로 하는 성매수 및 성매수를 위한 유인범죄
(제13조),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는 범죄(제14조제3항)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필요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때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보호·선도할 수 있고
-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 기대



감사합니다



CA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

—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장윤식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 : 영국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장윤식*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II. 영국의 위장수사 실무사례 |
| II.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위장수사 실무요소 | IV. 정책제언 |

I. 들어가며

산업혁명으로 도시화와 함께 증가하는 범죄문제에 대비하고자 19세기초 프랑스에서 비독(Eugène François Vidocq)을 중심으로 비밀수사조직¹⁾을 창설한 것을 근대 공적 수사조직의 시초로 보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가 범법자 출신으로 지하세계에 정통한 비독은 감시(surveillance), 비밀 정보원(informant)활용과 함께 신분위장수사(undercover operation, 이하 위장수사²⁾)등 소위 은밀한 수사기법(clandestine method)을 적극 활용하여 대단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위장수사는 범죄수사와 역사를 같이하는 중요한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를 도입한 영국에서 정치적 남용 문제가 제기된 이래 신분위장수사는 법적·윤리적인 도전에 놓였고, 특히 2차 대전 이후 인권이나 공적윤리에 대한 기대의 증가, 파시즘에 대한 반성 등으로 위장수사는 유럽, 특히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매우 위축되었다.³⁾

하지만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전 등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시 위장수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공산권 붕괴와 함께 세계적인 안보문제로 격상된 마약 밀매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9·11 테러공격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아동성착취물(CSEM) 제작·유포를 포함하는 사이버

*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교수, 공학박사

1) 1811년 설치된 Brigade de la Sûreté("Security Brigade")를 시초로 보고, 런던경시청과 오늘날 수사부서 조직명으로 일반화된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는 1883년이 돼서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발제문은 목적상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위장수사' 용어를 사용한다.

3) 나치정권에서의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의 영향으로 지금도 독일에서 신분위장수사관의 투입은 그 요건이나 절차가 엄격하고 나쁜 인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위장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발달과 함께 다크웹(Darkweb)과 암호화페 등을 통해 범죄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후 추적식 수사기관의 접근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은밀하게 범죄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마약구매를 가장하는 등 단순한 불법행위 가담을 위장하는 것으로부터 수사대상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잠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죄의 발본색원을 시도하는 것⁴⁾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과 범위 등에서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그간 위장수사라고 할 수 있는 수사사례가 없지 않지만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논란여지로 인해 제도가 공식적으로 정착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위장신분의 공적사용이나 수사상 위법행위예의 가담 등은 면책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위장수사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련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한 것은 필요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도를 운영해온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위장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는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도 하위 법령의 제정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무엇보다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으로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합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이에 따른 법률해석 등을 통해 점차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로 효과적으로 위장수사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위장수사 실무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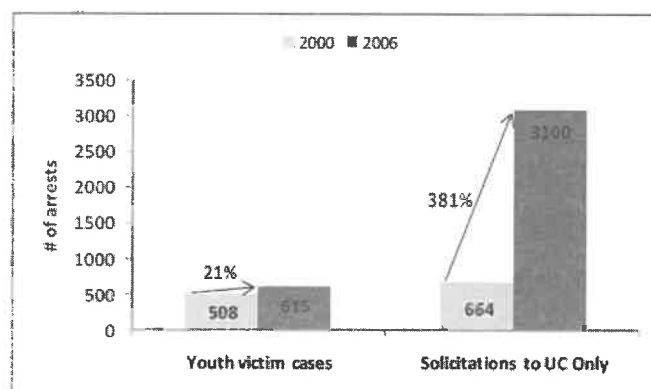
1. 디지털 성범죄와 위장수사의 기대효과

이미 입법과정에서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4) 대중적으로는 전자를 decoy 후자를 sting (또는 sting operation)으로 칭하기도 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undercover operation 내지 undercover policing 등으로 칭한다.

학술적으로도 사건발생 후 사후적인 범죄수사의 한계의 극복과 범죄예방 효과, 효과적인 증거의 수집을 통한 소송비용의 감소, 범죄자에 단속위험의 증가로 인한 범행비용의 상승을 통한 범죄억제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용이하지 않은데 그것은 연구대상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법집행 기관이고, 게다가 비밀리에 수행되는 위장수사의 특성 등으로 자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Holt, 2019).

하지만 많지 않은 실증적 자료 중의 일부는 온라인 아동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기도 한다. Wolak 등(2009)이 수행한 연구에서 2000~2006 미국의 경우 강간 등 성범죄가 감소하였고, 온라인상의 아동성범죄수도 소폭(21%) 증가하였지만,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실제 아동이 아닌 신분위장수사관에 대한 유인사례는 급격히 증가(381%)하였다. 이는 적발히 매우 어려운 관련 범죄의 단속에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그림 2).



〈그림 1〉 2000~2006년 미국내 온라인 아동성범죄자 검거

하지만 이러한 위장수사 활동이 실제 범죄의 발견 뿐 아니라 얼마나 억제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실증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 전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는만큼 실제의 문제와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관련 연구 또한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위장수사의 규제

위장수사의 허용과 규제는 이에 대한 각국 사회인식과 사법제도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위장수사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미국(연방)의 경우 법률로 위장수사를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 위장수사에 수반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목적범에서의 범행동기나 정당행위 항변(public authority defense)를 통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정도를 벗어난 범위유발형 함정수사(entrapment)는 위법으로 보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oh, 2009) 반면 같은 보통법계라도 영국의 경우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범죄수사방법을 규율하고자 2000년에 입법한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RIPA)에서 위장수사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최근 특히 사이버상의 위장수사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였으나⁵⁾ 개별 규율 내용에서도 위장수사에 대한 법원허가 요건이나 위장수사를 위한 아동성착취물의 활용의 허용⁶⁾ 등 세부사항에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RIPA에서 위장수사는 비밀인간정보출처(Covert Human Intelligence Sources, CHIS)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 세부적인 규율은 내무성의 CHIS 실무규칙(Code of Practice)⁷⁾에서 아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CHIS 실무규칙은 주로 위장수사에서 RIPA의 합법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규율을 다루고 있다.

- 비밀인간정보출처(CHIS) : 정의와 사례
- 승인에 관한 일반규칙
- 승인에 관한 특별고려
- 실행 절차
- 위법행위 승인
- 관리
- 기록유지 및 문제 보고
- 보호수단(safeguards)
- 상급책임자와 위원회의 감독
- 민원

미국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하는 법집행기관 등이 각각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FBI의 경우 영국의 CHIS 실무규칙과 유사하게 법무부의 위장수사 가이드라인⁸⁾을 두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영국의 실무규칙에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2020. 참조.

6)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나 덴마크 등 일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Vendius, 2015)

7) 현재 2021. 1월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49806/Covert_Human_Intelligence_Sources_Draft_Revised_Code_of_Practice_FINAL.pdf

8)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 1992.

비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다.

- 도입, 정의
- 일반권한
- 위장수사의 승인
- 긴급 승인
- 합정수사로부터 무고한 상대의 보호
- 위장수사의 모니터링과 통제
- 유보조항

위와 같은 법률과 규칙은 주로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허용조건과 절차, 그 통제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검토를 하지는 않는다.

한편, 위장수사의 목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 그리고 활동의 관리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장수사의 경우 비밀특성과 위험성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조직관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다른 조직범죄에 대해서 폭넓게 허용되어 일정 수준의 관리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 위장수사가 법제화되고 경찰 내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처음이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3. 효과적인 위장수사 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위장수사는 수행과 관련되는 조직관리적인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 전략수립

위장수사 제도의 도입은 많은 사회적 관심 속에 심각한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활동의 목표와 실천방안에 대해 조직 나아가 국가적인 전략과 연계된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잘만들어진 전략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부적인 목표의 달성여부 등 책임행정의 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https://www.justice.gov/archives/ag/undercover-and-sensitive-operations-unit-attorney-generals-guidelines-fbi-undercover-operations>

○ 법령의 정비

국가 내지 조직의 전략과 연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후속 법령의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실무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명목상 신분이나 금융거래 신분을 발급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수사관신분 위장 외에도 위장웹사이트(Honeypot)나 위장회사의 설립과 같은 수사방법의 허용과 같은 문제 또한 고려될 수 있다.

○ 조직 구성

위장수사와 관련된 조직의 구성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위장수사는 조직 내부에서 조차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이며, 이에 각각의 직급과 직종 내지 직위 등의 구분을 포함하여 직무를 설계하고 분석하여 조직구조와 함께 역량표준을 개발하여 배치 인력의 선발과 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역량기반(competency-based) 인사관리 체계는 이러한 조직과 직무의 설계 및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지식기반으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 인력의 선발과 전문성 확보

위와 같은 직무설계와 분석등을 통해 개발된 직위와 적격성 요건에 맞춰 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역량표준 뿐 아니라 실제 실무를 위해하기 위한 표준실무지침이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장수사는 그 특성상 자칫 사회적 논란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표준실무지침의 개발에 법적·기술적·운영적인 모든 측면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장수사관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신분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배치가 이루어지면, 이후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수사관이 혼합되어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수사관 배치 이전에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서둘러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예산확보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 구축 외에도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마련, 작전의 수행 등 위장수사는 적지 않은 예산수요가 있을 것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 구축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장수사의 성과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 대해서 학술적 내지 실용적인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연구개발은 직접적인 업무성과의 개선 뿐 아니라 경찰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확보, 사이버공간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이버 치안분야 국제사회에의 리더십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해외에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위장수사를 위한 조직의 운영 등 실무체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특성상 공개된 해외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예외적으로 영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RIPA와 CHIS 실무지침 등 주로 위장수사의 통제를 위한 법령 외에 구체적인 실무체계에 참고할 수 있는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⁹⁾에서 발표한 표준실무지침이 공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이를 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Ⅲ. 영국의 위장수사 실무사례

1. 개요

위장수사에 대한 경찰대학의 표준실무지침(APP)¹⁰⁾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0월에 발간되었으며, 위장수사 표준을 만들기 위한 다기관 전문인력 커뮤니티인 국가위장수사 작업반(National Undercover Working Group, NUWG)¹¹⁾의 받아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Mark Kennedy 스캔들¹¹⁾을 비롯해 수차례의 위장수사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최근의 감독 등 규제강화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9) 이전의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와 National Police Library 등을 결합하여 2013년 창설되었으며, 영국 경찰의 전문성개발, 업무표준수립, 지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10) <https://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covert-policing/undercover-policing/>

11) 극단주의에 대한 범죄예방 빌미로 환경단체에 수년간 잠입하였다가 2010년 발각되어 논란이 된 전 영국 경시청 수사관.

위 표준실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다.

2. 부서 인증

인증(accreditation)은 경찰의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¹²⁾에서 위장수사부서(undercover unit)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이다.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를 경찰대학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최소 3년에 한번 인증의 지속여부에 관한 방문심사를 받게 된다. 위장수사부서는 기본, 고급, 온라인 등 3개 유형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 위장수사관

영국에서 위장수사관은 Undercover operatives(UCOs)¹³⁾로 불린다. UCO는 지원자 중에 선발되며 위험기반 임기지침(risk-based tenure guidance)¹⁴⁾에 따라 신분이 유지된다. 필요한 역량의 세부사항은 경찰직 프로파일(Policing Professional Profiles, PPP)¹⁵⁾에 규정되어 있다.

UCO는 기본, 상급, 온라인으로 구분되며 각 직위별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기본수사관(Undercover Foundation Operatives, UCFs) : 상당한 신분지원 작업(backstopping)¹⁶⁾을 요구하는 통상의 위장수사관. 기초교육(initial training)을 받은 후에 온라인이나 마약구매자 훈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상급수사관(Undercover Advanced Operatives, UCAs) : 상당한 신분지원 작업이 필요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수사관이며, 기본수사관 중에서 선발된다.
- 온라인수사관(Undercover Online Operatives, UCOLs) : 온라인을 통한 비밀 활동을 수행하는 수사관으로, UCF나 UCA는 UCOL을 겸할 수 있으며, 온라인

12) 이전의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와 National Police Library 등을 결합하여 2013년 창설되었으며, 영국 경찰의 전문성개발, 업무표준수립, 지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13) FBI 지침에는 undercover employee로 표기되며, 흔히 undercover agent로 불린다.

14) 위험기반 임기지침은 고정적인 기간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기반 평가에 근거하여 직위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15) PPP는 직위별로 그것이 속한 경찰직군과 하위그룹, 등급과 함께 역할과 임무, 행위요구사항(behavioural requirement), 교육/적격성심사/기술/경험 요구사항, 지속전문성개발(CPD), 전문가등록/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 위장신분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나 활동흔적 등을 형성하는 지원활동을 뜻한다.

수사만을 할 수 있는 수사관(Undercover Online Operative Only, UCOLO)도 있다.

○ 위장수사 참여요건

UCO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Active(활성), 그렇지 못한 경우 Dormant(비활성)로 구분되며 Active한 경우에만 실제 수사에 투입될 수 있다. UCF/UCA/UCOL/UCOL가 Active하기 위해서는 ① 12개월 이내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거나 지속전문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받았을 것 ② 매년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서명할 것 ③ 작전책임자(COM-UC)가 승인할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덧붙여 UCA는 6개월에 한번, 온라인 아동학대 등을 수사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한 UCOL/UCOLO¹⁷⁾는 매 3개월마다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를 통과해야 한다.

위장수사관 행동강령

(National code of conduct for undercover operatives)¹⁸⁾

1. 위장수사관은 관련 법집행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장수사관은 경찰직에 요구되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에 정해진 원칙과 표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3. 위장수사관은 관련 행동준칙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장수사관에게 일반적인 의무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며, 역할내 행동은 반드시 승인된 업무수행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위장수사관은 권한의 이용 및 행사와 관련된 요소들을 숙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권한의 이용 및 행사와 관련된 일탈이 있는 경우 가장 신속히 관리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위장수사관은 권한의 이용 및 행사, 임무수행 중 획득한 증거와 관련하여 법정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
6. 위장수사관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위장활동에서 배제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위장수사관은 승인권자 혹은 작전 관리자에 의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위장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
8. 위장수사관은 위장신분과 설비를 승인된 작전 또는 승인권자나 작전 관리자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9. 위장수사관은 실제적이거나 전자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승인받지 않은 한 범죄가 되거나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물건, 물자, 물품이나 물질을 소지, 사용, 획득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
10. 위장수사관은 소속 관리자의 허가없이 위장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11. 위장수사관은 위장활동 중이라도 계선 관리자와의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위장수사관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작전수행을 지속하여서는 안된다.

17)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13. 위장수사관은 불필요하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에 착수해서는 안된다.
14. 위장수사관은 약물 및 알코올 검사와 관련해서 소속 기고나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위장수사관은 위험평가, 승인된 임무 내지 보안, 안전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사항이라도 보안 및 복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위장수사관은 명시적인 작전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장수사를 하는 사실이나 여하한 위장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
17. 위장수사관은 목격자로서 작전 관리자에게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사항이라도 알려야 한다.
18. 위장수사관은 임무수행에 관해 염려되는 사항은 모두 소속 위장수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위장수사관은 관련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른 일정에 참석하고 여하한 불리한 문제라도 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0. 위장수사관은 공직자비밀준수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하한 모든 작전과 수사상 세부사항을 발표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에는 수사방법과 위장수사부서의 구조에 관한 여하한 정보를 포함한다.

4. 조직 기반

인증받은 위장수사부서는 다음과 같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infrastructure)을 갖추어야 한다.

- 지원요원(Cover officer) : 기밀유지와 복지에 관해 비밀업무와 일반업무의 가교 역할
- 신분안전조치(Backstopping) : 비밀신분과 본래신분의 연결에 관한 단일 연결점
- 행정(Office and administration support)
- 작전책임자(COM-UC) : 경위(Inspector)이상 개별 작전의 책임자
- 부서장(Head of unit) : 경감(Chief Inspector)이상 UCO 부서장
- 조정관(Operational lead) : 각 작전간 조율 담당
- 승인관(Authorising officer, AO) : 경무관(Assistant Chief Constable) 이상 작전 승인권자-12개월 이상 작전은 경찰청장 및 수사권한위원회 법률심사관의 사전승인 필요
- 상급책임자(Senior responsible officer, SRO) : 위장수사 관리에 관한 기관의 절차적 연결성 등에 책임있는 고위관리자

18) <https://www.app.college.police.uk/wp-content/uploads/2015/08/Code-of-Conduct-for-UCs-070815.pdf>

5. 복지

위장수사관들은 심리평가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는 가운데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복지(Welfare) 환경이 요구된다.

- 성격평가: UCF를 선발할 때 성격평가를 통해 적성과 지원동기,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 심리평가: UCA와 UCOLO의 경우 선발과 계속활동을 위한 정기검사가 요구된다.
-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심리평가 이후에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치료나 처치
- 작전책임자(COM-UC)는 수사관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6. 신분안전조치와 과거기록 만들기

신분안전조치와 이야기 만들기(backstopping and legend building)란 의혹을 받지 않을 비밀신원과 조직구조를 개발, 유지, 지원하기 위한 절차이다.

- 신분안전조치(Backstopping)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비밀신원과 조직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와 필요시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작용이다. 경찰활동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분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에 따른 기밀문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꼭 필요치 않은 경우 외에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 과거기록 만들기(Legend building)는 위장된 과거기록과 신분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만들기는 작전책임자의 권한으로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RIPA를 고려한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야기만들기와 관련되어 증거가 수집될 수 있으며 증거규칙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보안

위험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작전보안(operational security)이 요구된다.

- 모든 직원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인지된 보안위험은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안관리도구를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많은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있다.

- 정보는 적절한 보안이 요구되어야 하며 배포하는 경우 정보보고서의 형태로 삭제조치(sanitization)하여야 한다. 정보를 수수하기 위한 안전통로(sterile corridor)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언론 전략 : 적절한 언론 상대 보호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개는 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유지하며, 위장수사관의 신분, 사용된 전술, 사용된 기술적 도구의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임무수행

임무수행(Conduct) 중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요원 도발자(Agent provocateur) : 요원 도발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저 지르지 않았을 법의 명시적 위반을 저지르도록 유도 한 다음 그러한 범죄를 알리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위장수사관은 요원 도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 위장수사 중에는 임무수행의 변인(parameter)들이 심지어 동일 작전이라도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관계자는 각각의 위장수사관들이 승인된 임무가 변인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범법행위와의 관여 :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위장수사관은 보고해야 하는 범죄활동에 관여해야 할 수 있다. 판례들이 위장수사관이 범죄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의 요구사항과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RIPA 승인에서 특정된 행위의 일부로 설정될 것이다. 승인시 ① 범죄의 계획과 수행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말 것 ② 사소한 역할만 수행하도록 할 것 ③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주범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검거하기 위한 경우 등이 고려된다.
- 장비의 사용 : 위장수사관이 감시장치를 사용할 때는 위장수사관의 참여하에 수행하는 한 별도의 감시(surveillance) 활동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위장수사관이 현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 위장수사관이 검사장치를 부착 또는 소지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나 사적 자동차 내부에서

그 안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친분 또는 성적 관계: 위장수사관은 임무수행 중에 잠입하려고 하거나 대상으로 삼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 친근한 성적관계를 가지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작전 전술로 채택되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관계는 위장수사관에 대한 현재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기록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를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작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작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성적 속성을 가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예. 온라인)에 부수적인 침해를 고려하여 임무수행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성적 속성을 가진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현재하는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9. 승인절차

위장수사의 개별건마다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⁹⁾ 승인은 RIPA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CHIS 실무규칙(Code of Practice)과 판례를 고려해야 한다.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승인요청

승인요청시에는 수사대상 범죄, 위장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사용될 비밀전술의 종류와 사유, 수행의 중점사항,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이와 작전계획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관의 비례성 평가를 위한 증거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적 신청문서: 승인신청서, 각 위장수사관에 대한 위험평가서, 승인 혹은 반려문, 필요한 경우 구두신청 및 승인
- 선택적 신청문서: IPCO의 검토, 검사의 조언, 관련 해외문서

○ 필요성, 비례성 및 부수적 침해

- 필요성(necessity): RIPA에 따른 필요성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비례성(proportionality):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안이 중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안이

19) 승인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RIPA와 CHIS 실무규칙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매우 경미하다면 어떤 위장수사도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에 의해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면 위장수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고려할 요소 : 대상 범죄와 손실의 중합과 정도에 비추어 제안된 활동의 규모와 범위, 왜 대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가능한 최소 침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 위장수사 수행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지와 그런 경우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 왜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또는 실패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거, 계획된 활동이 법제의 적절한 활용인지와 합리적인 대안이나 정보수집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 부수적 침해 : 승인관은 작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수적인 침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교, 의료, 언론 내지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포함되었거나 의회 구성원간 혹은 제3자와의 의사소통이 포함되었는지 고려해야 함. 불가피한 침해(예. 지인의 프라이버시), 예측 가능한 침해(알려지지 않은 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반적인 침해(일상적으로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3가지 유형의 부수 침해를 고려해야 함.

○ 해외승인과 배치

- 외국기관의 수사관의 국내 또는 국제 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RIPA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해외 배치 : 영국 수사관이 RIPA에 따라 해외 배치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관과 승인

- 승인관은 수사와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조직이나 긴급한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승인관들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직급과 인증된 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 모든 승인은 최초 12개월 작전에 대해 경무관(assistant chief constable)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함. 승인은 7일 이내 IPCO에 통보되어야 한다.
- 긴급 구두승인: 긴급한 경우에 구두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72 시간 내에 취소 또는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 승인과 비밀 정보: 12개월 이상의 작전이 요구되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획득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급(chief constable)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승인기간은 3개월임.

10. 계획, 위험과 배치

위장수사부서는 수사/작전팀을 위해 위장전술을 수행한다. 위장수사부서는 위장수사관의 계획과 위험관리, 배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 계획

위장수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장수사 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위장수사 부서원은 작전부서와 전술구상을 위해 작전목표를 분명히 하는 등 논의한다. 위장수사의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와의 논의가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계획단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필요한 자원의 배치와 관련해서 상응하는 상급 책임자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 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 위험평가

위험평가는 위장수사관의 배치 내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작전위험평가: 작전위험평가는 작전승인신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관(operational lead)이 위험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속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
- 위장수사관 위험평가: 배치된 위장수사관마다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전책임자에게 위험평가 책임이 있다. 작전책임자는 위장수사관이 안전한 무기 취급, 체포절차를 비롯한 추가적인 건강, 안전 및 통제수단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여야 한다.

○ 배치전 책임

배치(deployment)전, 조정관과 지원요원은 모든 위장수사관이 다음의 지시를 읽도록 해야 한다.

- 요원 도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 위장수사관은 이미 벌어진 범죄에 관여하거나 불법적인 제안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를 표현할 수 있다.
- 위장수사관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일관되고 균형잡힌 형태로 행동하여야 한다.
- 위장수사관은 개별 행동이 승인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도록 해야할 개인별

책임이 있다.

- 또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수사관은 지시사항에 서명한다.
- 승인의 세부내용을 본다.
- 배치의 목적과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

작전 책임자는 위장수사관이 작전 내내 정기적으로 지시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경찰관과 같이 약물남용테스트 정책에 따라야 한다.

○ 배치 책임

- 브리핑과 보고 : 위장수사 계획단계에서 브리핑과 보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담당자는 위장수사관의 건강과 보안, 적절한 기록 등을 위해 모든 브리핑과 보고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업무시간 : 위장수사관은 근로시간규정(1998)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장수사관이 정신·육체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문제가 있을시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배치후 책임

- 위장수사관에 대한 보호는 승인의 취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위장수사관의 신분과 작전을 노출할 수 있는 여하한 것도 사전 승인 없이 유출해서는 안된다.
- 침해와 노출 : 조정관은 여하한 비밀수단과 전술이 침해된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하한 위장수사관을 지칭하는 이후 보고서(예. 포상)는 위장수사부서와 협의 후 작성되어야 한다. 포상은 위장수사활동을 지칭해서는 안된다.
- 증거의 준비 : 위장수사관의 진술은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 위장수사관이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변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기술적 도구의 사용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작전상 필요와 위장수사관에 대한 위험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전팀은 위장수사관이 기술도구를 가지고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다른 수단에 의한 독립적인 보강작업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위장수사작업반(NUWG) 하위그룹이 기술적 도구의 적합성과 보안성을 평가한다.

11. 목격자 익명성

모든 법집행기관은 위장수사관의 신원보호 의무가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며 위장수사관의 임기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위장수사관은 실제 신분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異名, pseudonym)을 사용하여 배치된다.

- 목격자 신원비밀보호 명령(anonymity order): 작전책임자는 미리 작전관련 검사와 목격자 신원비밀보호에 관한 상의하여야 하며, 매 증거의 제출시 그 필요를 논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계법률에 따라 신원비밀보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격자의 신빙성에 관련사항이 검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위장수사관 신원비밀보호 요청: 작전을 감독하고 부서 전체에 대해 책임 있는 지휘관(superintendent) 명의의 신원비밀보호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에 출입할 때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위험평가: 신원비밀보호 요청을 위한 위험평가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제공하며, 이 때 체크리스트 형태의 단순한 평가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2. 기록

모든 위장수사관 배치와 관련된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 기록유지

형사절차 및 수사법(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1996)에 따른 기록유지 외에 IPCO에 의한 감사목적으로 모든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때, 정보관리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정보관리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감한 정책/결정 일지

일지에 다음 사항의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전목표, 조직구성, 보안, RIPA, 위험평가, 심리평가보고서, 브리핑과 보고회, 첩보관리, 기술요소, 포렌식 전략, 증거품과 공개, 검사, 언론전략

○ 배치 기록

배치와 관련해서 다음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장수사관의 브리핑과 보고, 목표, 작업지시, 지시확인서, 안전변수

○ 위장수사관 노트

- 위장수사관은 증거기준에 맞춰 종합적인 활동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장수사 부서는 적절한 전자장치 등 필요한 기록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최초 배치시 즉시 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 전에 노트가 작성되어야 한다.
- 위장수사관의 노트는 이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본 노트는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한다.
- 작성시간, 사건의 순서, 증거 세부사항, 사안을 기억하기 위한 물건과 대화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
- 노트 작성시: 삭제하지 말 것, 일부를 뜯어내지 말 것, 노트 사이 빈 여백을 남기지 말 것, 덧쓰지 말 것, 행간에 기재하지 말 것, 직접 화법을 구사할 것.
- 부주의로 위장수사관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수사관의 노트와 오디오/비디오 산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작전팀: 작전 책임자의 승인하에 작전팀은 위장수사관의 노트를 살펴볼 수 있다.
- 기소팀: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기록에 접근토록 할 수 있다.
- 변호팀: 검사와의 논의나 법원 명령에 의해 변호팀이 적절한 보안조치 하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보호조치에는 편집(redaction), 픽셀화(pixelation), 부분 삭제(sanitization) 등이 있다.

IV. 나오며: 정책제언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제 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무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경찰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 온라인 아동성범죄에 특화된 위장수사 규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UCOLO이라고 하여 온라인만을 대상으로하는 수사관인증을 두고 있다. 온라인에 특화된 규율과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외국의 경우 포괄적인 위장수사 규율이 이미 존재하여 제도운영이 용이한 반면, 국내에서는 최초 도입에 따른 제도구축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다.
- 사법적인 허용성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전반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과 지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실제 위장수사의 이행과 관련된 초기혼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표준적인 기법과 의사소통을 위한 포괄적인 위장수사 실행매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장수사가 단지 수사기법이 아니라 수사관의 신분요소 및 전담조직(부서)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직무설계를 토대로 한 역량표준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자격 내지 인증제도와 같은 많은 부수 제도가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 최소한 위장수사 관리자와 실무자 2개 직위에 대한 역량표준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예방을 위한 노력의 효과측정과 같이 업무의 평가와 전략개발을 위한 R&D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심리평가의 지원을 포함한 복지와 위장수사관이 자발적,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환경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필요한 예산의 적절한 산정과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내부 혹은 외부의 객관적인 감독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등의 마련 필요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적절한 관리체제의 마련은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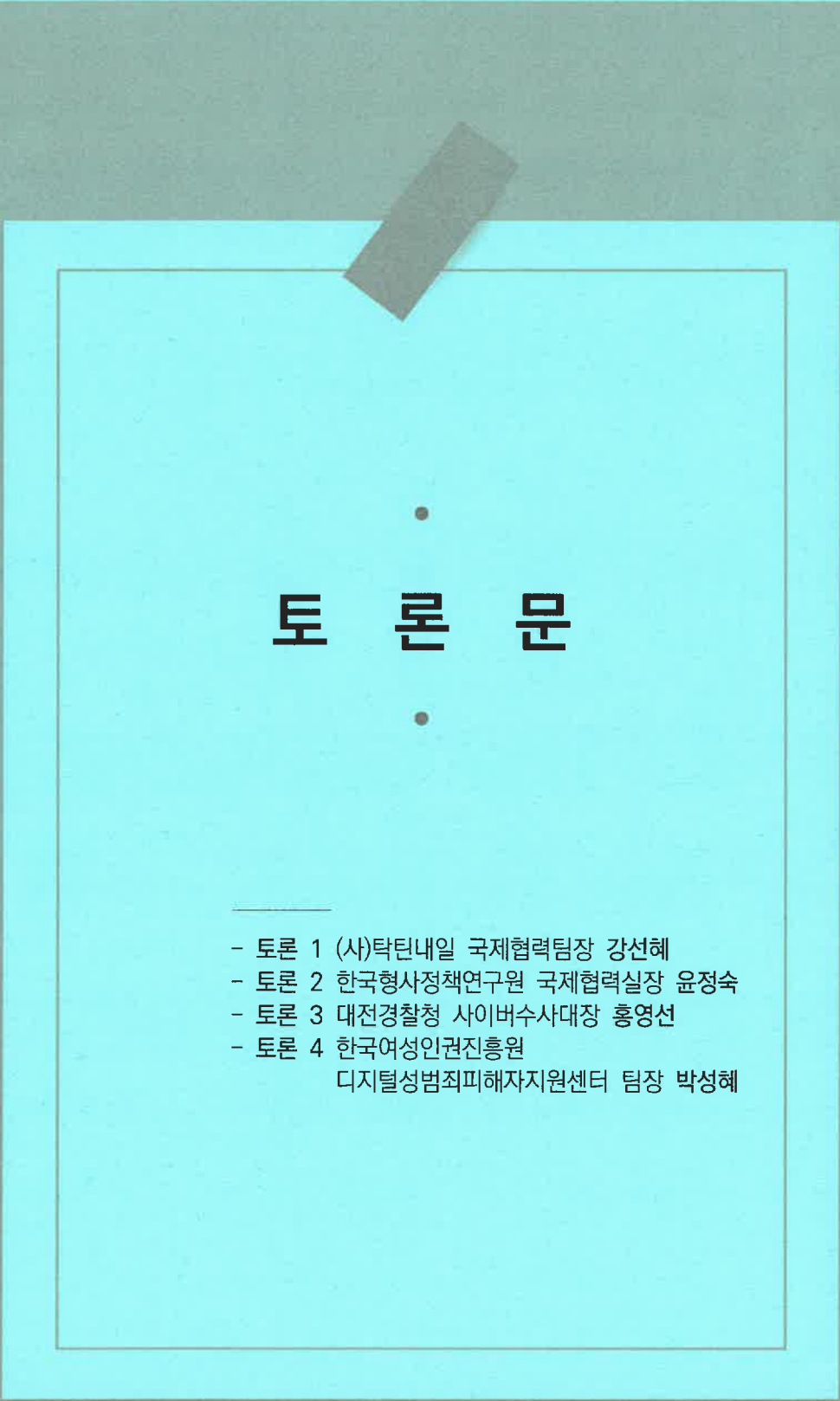
위장수사는 잘 수행될 때 범죄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형사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온라인 수사의 어려움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 위장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러 인권선진국에서도 위장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찰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위장수사와 같은 치명적인 수사방법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잘 관리되며 효과적 활용되는지 그 결과는 경찰수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20) 참고로 영국의 경우 위장수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가능한 선에서 그 실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Undercover Policing Inquiry, <https://www.ucpi.org.uk/>)를 운영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Broadhurst, R. (2019). Child sex abuse images and exploitation materials. *Roderic Broadhurst, Child Sex Abuse Images and Exploitation Materials, in Roger Leukfeldt & Thomas Holt, Eds. Cybercrime: the human factor, Routledge.*
- Dawson, J., and Brown, J.(2020). Undercover policing in England and Wales, Briefing Paper No. 9044, House of Commons, UK.
- Holt, T. J., Cale, J., Leclerc, B., & Drew, J. (2020). Assessing the challenges affecting the investigative methods to combat online child exploitation material offens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1464.
- Joh, E. E. (2009). Breaking the law to enforce it: Undercover police participation in crime. *Stan. L. Rev.*, 62, 155.
- Vendius, T. T. (2015). Proactive undercover policing and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on the internet. *European Review of Organised Crime*, 2(2), 6-24.
- Wolak, J., Finkelhor, D., and Mitchell, K. (2009). Trends in Arrests of Online Predators. Durham, NH: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토 론 문

-
- 토론 1 (사)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강선헌
 - 토론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윤정숙
 - 토론 3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홍영선
 - 토론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박성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강선헌

1995년 더킨과 브라이언트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범죄 양상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에 혁명을 일으킨 컴퓨터는 범죄와 일탈 행동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성적 탈선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¹⁾”라고 언급했다. 그들이 1995년에 벌써 예상했듯이, 컴퓨터가 보편화 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이 발전 하면서 마약, 인신매매, 불법 무기거래, 조직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변화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도 ICT에 의해 빠르게 급변하였다. 이제 아동성착취 가해자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장소와 상관없이 수많은 피해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국경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익명성과 1:1 공간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설득 또는 그루밍하거나 협박, 강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후자에 속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아동성착취”라 하면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아동성착취는 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 섹스팅, 컴퓨터로 제작된 아동성착취물(CG등으로 제작한 아동의 모습 등), 게임 혹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아동성착취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 N번방 사건과 대국민청원 등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아동성착취물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던 범죄다. 아동구조연합(Child Rescue Coalition)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3천만에서 5천만 건의 아동성착취물이 매일 거래되고 있고²⁾, 엑팟 인터네셔널과 인터폴의 합동 연구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연령이 0세부터 시작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³⁾. 과거 아동성착취물 불법거래 사이트는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해외 범죄였지만, 2018년 손정우의 웰컴투 비디오 사건과 2020년 문형욱과 조주빈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이제 한국은

1) Durkin, K. F., & Bryant, C. D. (1995). “Log on to sex”: Some notes on the carnal computer and erotic cyberspace as an emerging research frontier.

2) <https://www.youtube.com/watch?v=hMVHz-111zY>

3) Interpol & ECPAT (2018). Towards a global indicator on unidentified victim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technical report.

아동성착취물 범죄 주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암호화페를 통한 거래, 유저를 통한 대량유포 등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용했으며, 마치 마약공장처럼 조직범죄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직접 조성한 범죄시장을 통해 이를 유통시켰다. 또한 가해자들의 어린 연령, 범죄의 목적이 성적 쾌락인 아닌 범죄이익을 위한 상업적 수단이었던 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차별적인 링크공유 등 ICT로 인해 달라진 범죄의 양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성향과 범죄에 대한 인식부족 등 복합적인 변화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연중에 아동성착취물을 ‘야동’과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 제2의 조주빈과 손정우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선 이러한 영상물이 쉬쉬하고 돌려볼 수 있는 성인잡지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임을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랜덤채팅, 게임채팅,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성착취 또한 심각한 문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적인 접촉을 목적으로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에게 접근,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아동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 유혹,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직접적인 물리적 만남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일체의 온라인상의 행동이 있었을 경우 그루밍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루머들은 아동의 취약성을 파악해서 접근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물리적 욕구를 충족해주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차차 피해자를 고립시킨 뒤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며 협박과 회유를 통해 통제하는 단계를 거친다. 2020년 서울시와 탁틴내일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은 주로 메신저, SNS 게시글에 대한 댓글, 게임 순으로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대체로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동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거나 얼굴, 손, 발, 몸 특성 신체 부위 등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⁴⁾.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아동 스스로 사진을 찍거나 만남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그루밍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착취에 응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법정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주장해 처벌을 면한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4) 서울시, 탁틴내일 (2020).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위해선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의 책임이 아동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은 긍정적인 한 발짝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신중한 판결을 통해 개정안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켜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온라인을 이용해 아동 대상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한 만연하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라오는 아동성착취 관련 광고, 유인, 알선 등은 해쉬태그(#)를 통해 쉽게 연결되고 일탈계, 아동 대상 성매매 게시글은 암호화된 제목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매일 수없이 포스팅되고 공유되고 있고, 탁틴내일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명의 활동가가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아동성착취 관련 게시글만 1,909건이었다. 아동보호기관, 사이버성폭력 대응기관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삭제요청을 하지만 게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어렵다. 단순 게시글 삭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검거하는 것은 위장수사를 통해 경찰이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아동대상 인터넷범죄수사 전담팀(ICAC Task force)이나 영국 국립범죄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 지휘팀(CEOP)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광고, 포스팅,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며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가해자에게 접근하고, 아동성착취가 명확해지는 즉시 체포한다. 또한 호주의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당시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거래 불법사이트였던 ‘Child’s Play’의 운영진과 사용자 대다수의 검거에 성공했다.

2020년 탁틴내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폭력 발생 시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학교 또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였다⁵⁾. 아동성착취 범죄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범죄의 검거는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 및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였다. 얼마 전 17세 소녀를 20대가 성착취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두명은 검거되어 처벌받았지만, 만일 수사기관이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광고글에 위장수사를 통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피해발생 전 알선 단계에서 가해자를 검거하며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위장수사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관련 기밀유지, 수사관 보호 등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장수사를 통한 가해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악에서 여중생이

5) 서울시, 탁틴내일 (2020).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성매매에 알선되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도 20대 남녀가 10대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로 착취한 사건에서 보듯 성매매로 알선된 청소년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에 범죄자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범죄자 검거를 목적으로 경찰이 청소년에게 접근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유의점은 모든 수사기법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규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다만 위장수사가 범죄를 부추긴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 ICAC와 CEOP가 아동성착취 광고에 접근해 소녀·소년으로 위장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애초에 가해자에게 아동을 성착취할 목적이 있었고 기회만 생긴다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14살 여자아이로 위장하여 광고글에 댓글을 다는 것은 실제 14살 소녀가 가해자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범죄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칭하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동이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확산성을 가지고 변화하며 심각해지는 아동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범죄자보다 한발자국 앞서야 한다. 아동성착취물이 공유되는 사이트나 플랫폼을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 그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온라인 아동성착취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번 아청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의 도입은 심화되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에 우리가 한발자국 앞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전담수사기구와 수사요원으로 수사기법과 역량을 발전시켜 더욱 능동적으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윤정숙

2009년 UN 특별고문의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 순간 75만 명의 소아성애자가 온라인 상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UN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별 기구에 해당하는 국제 정보통신 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하면, 특정 시점에 8억 3천만명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있는데 이는 104개 국가의 약 80%의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¹⁾.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여 착취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공간,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했으나, 앞으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을 점차적으로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루밍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약 60개국 이상이 넘는 해외 국가들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에서 통과에 이르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법률안들이 입법에서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폐기되는 일도 많은 상황에서, 입법의 기폭제 역할 한 N번방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통과 순간까지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온 권인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 부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를 통해 그루밍에 대한 정책연구 니즈가 있다고 판단, 2019년 그루밍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저에게도 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서 지난 1년이 매우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그루밍처벌법 도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1) Inter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영상물 제작, 배포, 감상, 소지죄 처벌 조항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를 신속히 발견 및 검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동이 가장 치명적인 접촉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사법기관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루밍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예방효과 까지 갖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는 그루밍을 성범죄의 예비 혹은 부수적인 행위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서구국가들의 판례를 보면 그루밍 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영국이 성범죄법을 개정하여 그루밍 처벌조항을 도입한 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그루밍 처벌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은 그루밍법을 제정한 후 다양한 종류의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특정 지역의 아동들이 인신매매 폭력 조직에 그루밍을 당해 성매매 등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른바 ‘스트리트 그루밍(street grooming)’을 폭로하였고 이후 하원 위원회(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Select)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광범위한 아동 착취 현황을 조사하게 되므로써 25명의 아동학대 범죄자를 기소, 유죄판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영국의 그루밍 처벌은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대화, 즉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 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만나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며,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1~7년의 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EU 가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를 2001년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 협약에 포함시켰고, 이후 란차로테 협약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협약’을 2007년 채택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 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법을 국내 법으로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네덜란드는 EU 지침과 란차로테 협약에 따라 2011년 네덜란드 형법에 성적 그루밍에 대한 처벌법규를 신설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만남 후 금전이나 선물을 약속하고 성적학대를 시도하는 행위를 처벌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만난 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라도 형사처벌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2017년 형사법을 개정하여 전송서버를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 및 계획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아동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최대 15년의 구금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그루밍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장면을 전송하는 행위는 그루밍과 성착취가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고 40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입법례 등을 보면, 유럽은 일찍이 유럽 의회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협약이나 아동성착취 보호방지에 관한 협약(일명 란차로테협약)을 체결하여 EU 가입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동성착취, 그루밍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성착취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해 나가고 대처해 야합니다. 불법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해외에 기반을 둔 다크넷의 마켓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여 아직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의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를 제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적 그루밍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루밍은 아동에 대한 성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되는 뿌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성적 그루밍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해외의 유관기관과 사법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상의 성범죄 퇴치를 위해 NGO 단체, 국제기구, 민간 영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번 온라인 그루밍법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아동 상대의 성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협력, 국제협력의 주체가 되고, 그를 통한 모델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홍영선

▶ 들어가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권유, 유인이 법제화되었고, 수사의 특례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현장 수사관으로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과거 사이버성폭력은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다가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물로 다양화 되었고, 몰래 촬영하던 영상이 착취, 강요에 의해 촬영되고 있으며,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유포되던 성착취물이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SNS를 이용해 확산되고 있고, 혼자 하던 범죄가 역할분담으로 조직화 하여 가상화폐 등으로 대규모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

▶ 위장수사가 포함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가결

이런 범죄수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당부분 시간이 지나 통상의 수사 방법으로는 추적이 곤란해 사건을 장기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일부 의지가 강한 수사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법률의 근거가 없어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만 적법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가결로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되는 수사특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 2부터 9까지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그에 따른 통제와 증거능력, 비밀준수의 의무와 면책, 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 범죄 (제25조의2 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유통 △온라인 그루밍<신설>) 한정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2 ①) ※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신분비공개 (신분비공개+기획제공형) 상태로 범죄현장(정통망 포함)·범인 접근 , 범행의 증거 및 자료 등 수집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2 ②) ※ 검사 청구, 법원 허가	범죄혐의 + 보충성 요건 충족시, 신분위장수사 (신분위장+「△신분 위장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위장신분 이용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 판매·광고」허용)
통제장치 (제25조의3, 제25조의4)	△ 신분비공개수사 : ①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 월 제한 ③ 경찰위(종료시)·국회(반기) 보고 ※ 내외부 통제 강화 △ 신분위장수사 :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 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 사법 통제 강화
증거능력 (제25조의5)	△ 수사·소추 및 범죄 예방 △ 징계 △ 손해배상청구 △ 다른 법령 규정 시 수집 증거·자료 사용 가능
비밀준수 의무 (제25조의7)	직무 관련자 전원 에 대해 공개·누설 금지 의무 부여
면책 (제25조의8)	고의·중과실 외에 형사·징계·손해배상 면책
지원·교육 (제25조의9)	△인적·물적 지원 △피해자 보호 등 수사 방법·절차 교육
벌칙 (제65조 ①)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처벌 (5년↓ 5천만원↓)

▶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방향과 과제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는 모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대다수의 범죄는 결과발생 이후 수사에 착수됨으로써 범행 과정의 증거를 쉽게 유실하는 것에 비하여, 위장수사는 범죄의 포착과 동시에 범행의 중요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할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예방은 물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보다 다양하고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신분 비공개 + 기획제공형」 수사로,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으로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가상의 신분을 말로 알리는 형태이며,

신분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 + 기회제공형 + 3가지 유형의 허용행위*」가 가능한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실행,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신분 비공개와 달리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생성하거나 위장거래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 3가지 허용행위 : ① 신분 위장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거래, ③ 성착취물 등 소지·판매·광고

‘N번방’ 사건의 경우로 살펴보면 **실무상 이용할 위장수사의 도구가 필요**하다. 비밀대화방에 가입할 때 인증할 가상의 신분증, 성착취물 구매에 필요한 계좌, 가상의 IP,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가상의 인물(외국의 경우 성인들이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을 기부)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도 미리 제작해 두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위장수사가 정착되려면 위장수사관들의 수사상황을 관리할 **위장수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가상의 신분을 이용한 SNS 계정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관리하여 범죄자들의 의심을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청 뿐 아니라 시도 경찰청에서 위장거래에 사용할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의 구입에 필요한 **위장수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신분 비공개·위장수사의 유형인 기회 제공형에 대한 실무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 유형을 정립해야 한다. 가령, 비밀단체방에 가입하기 위한 **잠입형 위장수사**, 성착취물 거래를 위한 **거래형 위장수사**, 비밀 대화방이나 성착취 사이트의 운영자 검거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을 경우 해당 방이나 사이트 내의 가입자 검거를 위한 **공간확보형 위장수사**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또 시민단체의 공익제보를 위해 일정기간 **위장수사 정보원 지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모쪼록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개정되는 수사특례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망의 요소로

인해 인터넷과 통신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는 은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극심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에 법정형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조치일 뿐 피해회복은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수사특례 개정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범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상현. (2020).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고려법학, 97(0), 157-192.
- 장응혁. (2020).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32(4), pp.243-270
- 박근숙 (2016).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기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채윤희·김휘강 (2020).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황

전화 02-735-8994 /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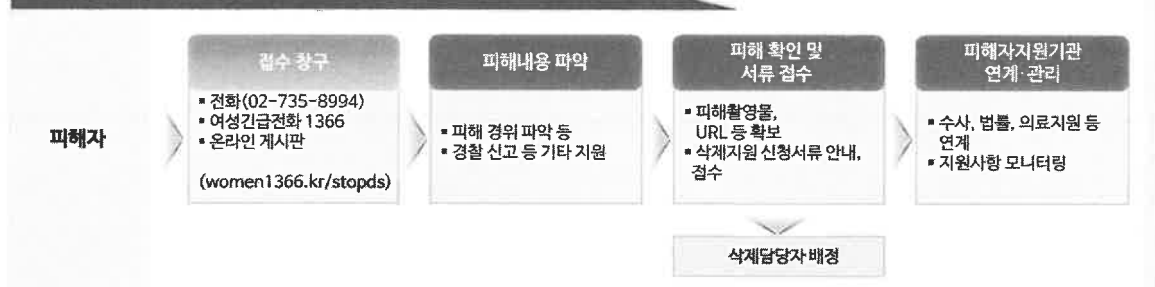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삭제 및 상담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연계 등의
 사후지원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Korean Women's Human Rights Development Center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피해접수 업무 흐름도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Korean Women's Human Rights Development Center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사전추적 업무 흐름도(신규)



아동청소년 선제적 삭제지원 근거법령 개정('21. 7. 1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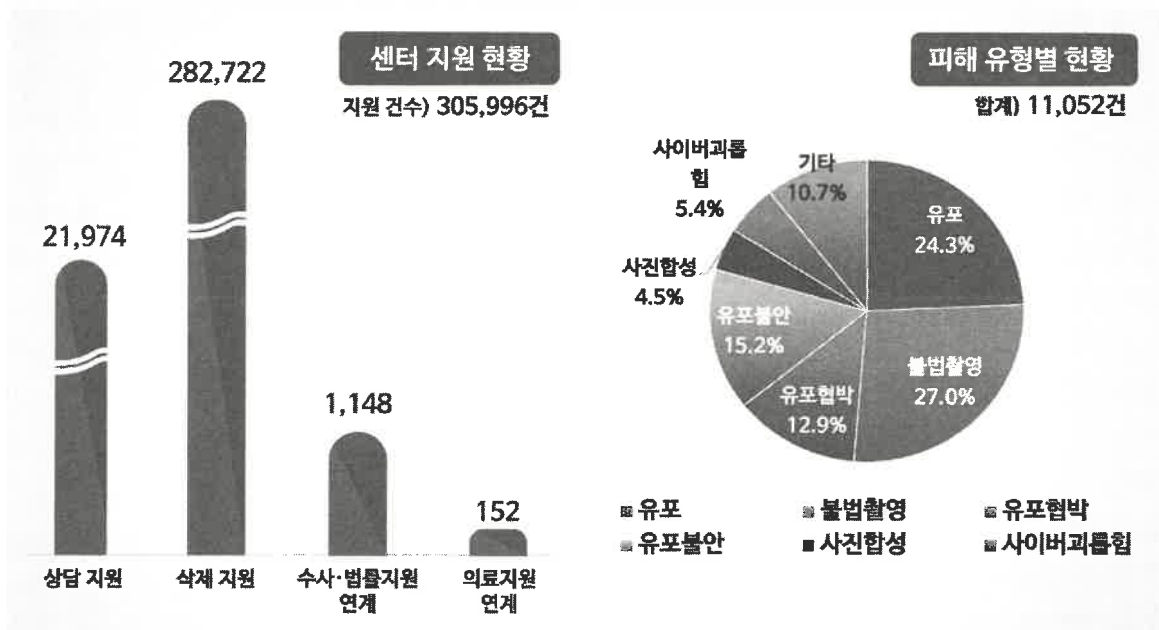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Korea Women's Human Rights Foundation

3) 센터 지원 통계 기간 | '18.04.30. ~ '20.12.31.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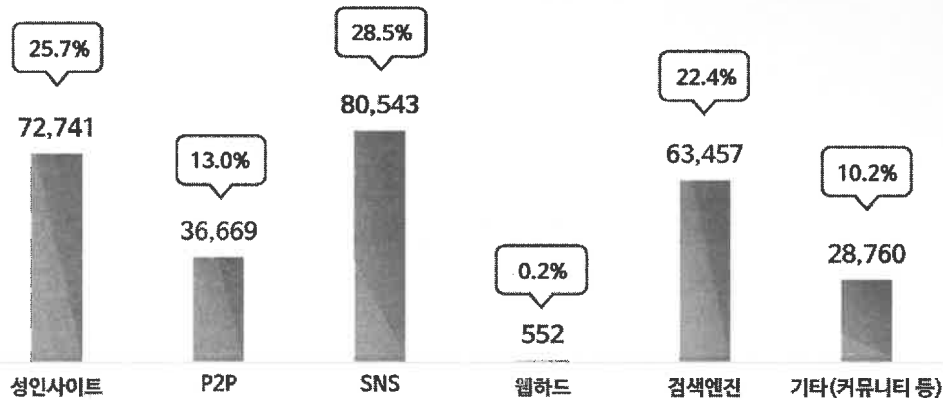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Korea Women's Human Rights Foundation

3) 센터 지원 통계 기간 | '18.04.30. ~ '20.12.31. 단위 | 건수

플랫폼별 삭제 조치 현황

합계) 282,722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센터 지원 통계 기간 | '20.1.1. ~ '20.12.31. 단위 | 건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연령대별 피해유형

연령	피해자 (명)	합계	유괴	불법촬영	유괴협박	유괴불안	사진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10대	1,204	1,803 (100.0%)	221 (12.3%)	589 (32.7%)	312 (17.3%)	362 (20.1%)	101 (5.6%)	82 (4.5%)	46 (2.6%)
20대	1,052	1,640 (100.0%)	420 (25.6%)	563 (34.3%)	243 (14.8%)	249 (15.2%)	79 (4.8%)	35 (2.1%)	51 (3.1%)
30대	332	515 (100.0%)	143 (27.8%)	193 (37.5%)	63 (12.2%)	75 (14.6%)	12 (2.3%)	14 (2.7%)	15 (2.9%)
40대	134	196 (100.0%)	43 (21.9%)	54 (27.6%)	53 (27.0%)	18 (9.2%)	4 (2.0%)	3 (1.5%)	21 (10.7%)
50대 이상	87	125 (100.0%)	19 (15.2%)	42 (33.6%)	36 (28.8%)	18 (12.8%)	0 (0.0%)	0 (0.0%)	12 (9.6%)
기타	2,164	2,704 (100.0%)	740 (27.4%)	798 (29.5%)	260 (9.6%)	330 (12.2%)	63 (2.3%)	172 (6.4%)	341 (12.6%)
계	4,973	6,993 (100.0%)	1,586 (22.7%)	2,3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488 (7.0%)

전체
피해자 중
10대
피해자
약 24%

*피해자별 주소 내용 중복 집계

*피해자 A: 유괴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고, 유괴와 유괴협박 피해를 중복하여 입은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

*출처: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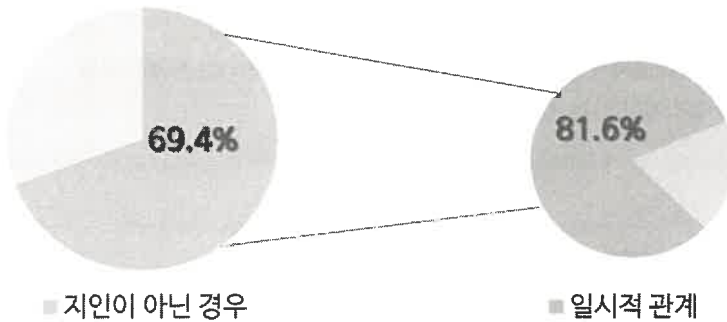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센터 지원 통계 기간 | '20.1.1. ~ '20.12.31. 단위 | 건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연령	피해자 (명)	합계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미상
10대	1,204	1,204 (100.0%)	23 (1.9%)	87 (7.2%)	2 (0.2%)	347 (28.8%)	30 (5.6%)	665 (55.2%)



일시적 관계? 채팅 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관계
(28.8%),
친밀한관계
(1.9%)

→ 10대 온라인
그룹링 피해

양상이 두드러짐

('19년 대비 '20년

온라인 그룹링

피해자(성인포함)

약 9배 증가)

*출처: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센터 지원 통계 기간 | '20.1.1. ~ '20.12.31. 단위 | 건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 성별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구분	합계	성인 사이트	P2P	소셜 미디어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여성	156,126 (100.0%)	37,285 (23.9%)	5,063 (3.2%)	65,544 (42.0%)	45 (0.03%)	24,854 (15.9%)	23,335 (14.9%)
남성	2,634 (100.0%)	1,047 (39.7%)	89 (3.4%)	350 (13.3%)	0 (0.0%)	529 (20.1%)	519 (23.5%)
계	158,760 (100.0%)	38,332 (24.1%)	5,152 (3.2%)	65,894 (41.5%)	45 (0.03%)	25,383 (16.0%)	23,954 (15.1%)

10대 삭제지원
총 건수 중
소셜미디어
약 41%

※ 연령대별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구분	합계	성인 사이트	P2P	소셜 미디어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10대	38,361 (100.0%)	2,745 (7.5%)	51 (0.1%)	26,911 (74.0%)	0 (0.0%)	3,865 (10.6%)	2,789 (7.7%)

*출처: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피해 양상

온라인 그루밍

-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그것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
-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성폭력을 목적으로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

“성폭력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감정적 관계를 통한 친밀함을 구축하는 것.” (Ost, Suzanne; 2009)

특성

- 그루밍 과정에서는 해당 상황의 그루밍 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움
- 가해자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물 혹은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 주로 1:1채팅(채팅/SNS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유의사항

- ✓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심리적 자책감과 불안이 심해,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사건발생 이후 채팅방을 나오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음

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피해 양상

사진 합성 및 도용

사진 합성

같은 반 남학생이 여학우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합성 전문 계정에 의뢰하여
성적 이미지와 합성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함.

사진 도용

SNS에 올렸던 사진이 '지인 능욕'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포됨.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와 함께 성적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문자가 올

특성

- 주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사이버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됨
- 이름, 주소, 나이, 휴대폰 번호 등 신상 정보와 허위사실이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음
- 합성, 도용 피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음

유의사항

- ✓ 주로 10대에게 발생,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음
- ✓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상담이 어렵고 주 유료 플랫폼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우나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음

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피해 양상

소셜미디어의 특징

■ 소셜미디어의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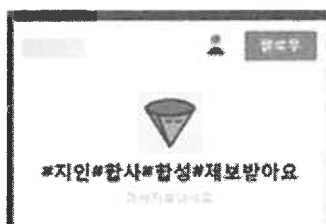
소셜미디어에는 유포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3가지 기능이 존재한다. 각각의 기능은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 유포 피해를 심화시킨다.

	① 해시태그(Hash Tag)	② 공유	③ 백업사이트
기능	관심사별 모아보기	순위는 복제	자동적인 복제
영향	가해자들끼리 쉽게 모여 서로 피해활동을 공유/거래	매우 빠른 유포 속도 매우 넓은 유포 범위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하급수적인 재유포

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피해 양상

소셜미디어의 특징

	① 해시태그(Hash Tag)	② 공유	③ 백업사이트
기능	관심사별 모아보기	순위는 복제	자동적인 복제
영향	가해자들끼리 쉽게 모여 서로 피해활동을 공유/거래	매우 빠른 유포 속도 매우 넓은 유포 범위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하급수적인 재유포



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피해 양상

10대 여성 피해자 증가

2019년 288명→2020년 1007명
(약 3.5배 증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

플랫폼 변동 현황

소셜미디어 → 게임 내 일시적 만남

온라인 그루밍 피해 이후 추가 피해 양상

피해 촬영물 유포 이후 학교폭력, 집단 내 따돌림 등 또래집단 내 고립

사례 1. 온라인 그루밍으로 만난 상대에게 신체 사진 전송→지인유포협박

사례 2. 게임 아이템 제공을 빌미로 신체사진 요구

사례 3. 소셜미디어 내 수사기관 사칭 협박 피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감사합니다.

〈전화〉 02-735-8994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3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공포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공동 세미나

2021. 3. 31.(수) 14:00 ~ 15: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 (북관 7층)



'여가부'

▶ YouTube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채널로 실시간 중계

(코로나19로 현장 방청은 불가하며,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인사말

국회의원 권인숙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회의원 양금희

경찰청장 김창룡

(좌장) 조은경 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발표

토론

- 1) 유나겸 팀장 - 위장수사
(서울 사이버성폭력수사팀)
- 2) 박미혜 과장 - 온라인 그루밍
(경기남부 하남서 여성청소년과)
- 3) 장윤식 교수 - 외국 사례
(한림대 글로벌학부)

강선혜 (탁틴내일)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선 (대전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의: 02-3150-1858)

주최 : 국회의원 권인숙 · 양금희

주관 : 여성가족부 경찰청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